

#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 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29조, 제64조,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켜 기금의 운영·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며,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(안 제7조).
- 다.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년도개시 4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라.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13조).

##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개정조례(안)

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제3조 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 출연금(시장은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)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제4조 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사업
2.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
3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
4.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
5.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
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제6조 (기금의 처리) 기금의 처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 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기획, 총무, 회계부서장, 주무부서장(당연·임명직)
2.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

⑤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 (심의회 의 기능) ①심의회는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2. 기금결산보고서안
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주사가 된다.

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체육담당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체육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 본다.

# 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①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,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이천시 체육진흥기금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.)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조 (목적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.</p>	<p>제2조 (기금의설치) ①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의로 처리한다.</p>
<p>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.</p>	<p>제3조 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시 출연금(시장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이천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3억원씩 출연한다.)</p> <p>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/p> <p>3. 기타 수입금</p>
<p>제3조 (기금의 관리) ①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4조 (기금의운용등) ①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②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다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1.~3.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5.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  <u>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</u>  <u>④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1.~3.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4.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            5. (현행과 같음)  <u>②기금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  <u>&lt;삭제&gt;</u>   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5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.</u>  <u>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 <u>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6조 (기금의 관리) 기금의 관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7조 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  <u>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 <u>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  <u>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            1. 기획, 총무, 회계부서장, 주무부서장(당연·임명직)            2.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(위촉직)  <u>⑤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	<p>제8조 (심의회의 기능) ①심의회는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운용계획안</li> <li>2. 기금결산보고서안</li> <li>3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9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</p> <p>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10조 (간사 및 수당)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③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제11조 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기금재산에 관한사항</li> <li>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li> </ol> <p>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기금관리 공무원 등) ①기금관리를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로 한다</p> <p>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출연금 및 이익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</p>	<p>제12조 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체육담당과장</p> <p>2. 기금출납원 : 체육담당주사</p> <p>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3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</p> <p>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</p> <p>3.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</p> <p>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 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
<p>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5조 (시행규칙).....</p>